(붙임3)
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 : 권 * *(39.01.24) 연 락 처 : 010-16**-****

주 소 : (41734)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***-**, ***호

항상 저희 원당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고객님께서 대출(연대보증 포함)한 아래 여신이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①항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**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**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**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**인 바,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1. 대상여신

(기준일자 : 2026.01.20.)

채무자	계좌(카드)번호	대출일자	만기일자	대출잔액(원)	연체금액(원)			연체시작일
권**	4906-12**-****-6000	2008.11.12.	-	74,332	미 납	원금	74,332	2025.06.25.
					원리금	이자	-	
					연체이자		4,192	
					비 용		-	
					합 계		78,524	

※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. 관련 통지사항

항 목	내 용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	2026.02.04
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	카드 대금 원금 및 이자 미납
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	카드대금의 상환 의무, 연체이자 부담,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/방법	원당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(https://wondang.nonghyup.com) 참조
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농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(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재약정,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인하, 이자감면, 담보권 실행 유예 등)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자	소 속	전화번호	사무실 주소
임 경 아	원당농업협동조합	031-965-596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36

2026년 1 월 20 일

발신인 : 원당농업협동조합 (인)

1626494014 217057 임경*